

-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연번	안 건 명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4. 2. 2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발의일자: 2024. 2. 8.
- 발 의 자: 이동운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2024. 2. 14.
- 상정일자: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2. 21.)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이 동 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이 실시하는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급식의 공공성, 공익성과 급식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신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협업, 위탁 방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신설)
- 다른 법 개정 명칭 반영, 부적절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 찬 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관내 유치원과 학교 등의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1항에 “학교급식”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따름.
- 안 제3조 제1항에 학교급식경비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원대상의 다양한 필요에 충족하기 위함이라 보여짐.
- 안 제4조 지원대상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범위를 넓혔음.
- 안 제6조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면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 현행 절차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음.
- 안 제13조 제1항에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구입, 수집, 가공 및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3조 제2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지역농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 수요 실태조사, 식재료 구매지원, 식재료 품질·안전성 관리,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 안 제14조 제1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과 농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
- 안 제14조 제2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음.
- 안 제14조 제3항에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 관련 기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 안 제14조 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관내 학교 등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11월28일까지 이동운 의원님의 4분의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구성

하고 서구 학교급식 지원 정책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서구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용역의 성과물인 「대구 서구 학교급식 지원 정책 개선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신설 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명을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비” 자구를 삭제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거나 “등” 자구를 추가하여 학교급식경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수정가결